

2007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

① 할당관세 운용계획

- ◇ 재정경제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원활한 물자수급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07년도에 30개 품목*에 대하여 기본관세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 06년에는 89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운용하였으나 철광석, 원목 등 63개 품목은 내년 기본관세를 개편안에 반영(기본관세율이 할당관세 수준으로 인하됨에 따라 내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대폭 축소

- 주요 대상품목은 기초원자재(원유), 사료용 원료(옥수수 등 8개), 중소기업용품(폴리에틸렌 등 5개), 첨단산업 지원용품(LCD 장비 2개), 품목간 세율불균형 시정물품(정제당 등 4개),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화 필요품목(이몬드 등 10개) 등 입니다.
- 이들 품목에는 전년대비 50% 이상 수입가격이 상승한 품목(유당, 귀금속 회), AI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사료용 원료(대두박) 등 3개가 신규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 이번 조치로 약 4,600억원 정도의 세수지원 효과(6월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② 조정관세 운용계획

- ◇ '07년도에는 국내산업보호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게 운용되는 조정관세를 16개 품목에 대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06년에는 18개 품목에 조정관세가 적용되었으나 내년에는 대외통상마찰 예방 등을 위한 조정관세 축소 운용방침 등에 따라 2개 품목(바나나·냉동홍어)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냉동민어 등 7개 품목은 세율을 인하 했습니다.

- ◇ 이번 조치로 약 1,000억원 정도의 세수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③ 적용 기한

- ◇ 할당관세 운용안은 '07년 1월 1일부터 '07년 5월 30일(조정관세 운용안은 07.12.31) 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07년도 할당관세 운용계획

할당관세[割當關稅, quota tariff]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이다.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 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때 사용된다. 적극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하여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를 관세로 부과한다.

수입할당제와 관세제도의 기술적인 특성을 혼합한 것으로, 두 제도가 개별적으로 실시될 때의 결 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특정물품에 대한 국내 생산자의 수입억제 요구와 수요자의 수입 장려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특정상품에 대한 국내총생산량과 총수요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지닌다.

기본운용방향

- ◇ 복지수요 확충 등에 따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비교세·감면 축소방침에 따라 필요최소한 지원 범위내에서 운용기본운용방향

〈할당관세 적용 품목선정 기준〉

- ① 전년대비 수입가격이 급등하여 수급예고가 있거나 물가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
- ② 축산농가, 중소기업, 첨단핵심산업 등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품목
- ③ 유사품목간 세율불균 형이 현저하여 시정이 필요한 품목
- ④ 가격안정 품목, 국내생산업체 보호 필요 품목 등은 제외

〈할당관세율 책정 기준〉

- '07년 실행세율의 50% 범위내에서 할당세율 운용

〈할당관세 적용 품목 현황〉

- 총 30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운용

'06년	제외	'07년 운용안 (30개 품목)				적용기간
		세율인하	세율인상	현행유지	신규	
89	55	1*	0	23	3*	'07.1.1~6.30

* 세율인하(1개): 설탕(할당 40→35%)

* 신규(6개): 대두박, 아크릴로니트릴, 천연가스, 귀금속회, 유연처리 원피, 유당

[30개 할당관세 품목 현황]

구 분		적용품목 및 세율(%)	
산업 경쟁력 강화 (16)	기초원자재 (2)	납사용 원유 (3→0)	일반원유 (3→1)
	농·축산업 지원 (8)	겉보리 (사료용, 5→2) 대두 (채유또는 탈지 대두박용, 3 → 1) 유장과변성유장 (20→4) 브라인슈림프알 (8→4)	근채류 (사료용 및 버섯재배용, 5/20 → 2) 메니옥펠리트 (7→1) 옥수수 (사료용) (3→0) <u>대두박 (1.8→1)</u>
	중소기업지원 (4)	저밀도폴리에틸렌 (8→4) 폴리라틱산 (8→4)	고밀도폴리에틸렌 (8→4) <u>아크릴로니트릴 (8→3)</u>
	첨단산업 지원 (2)	전식식각기 (8→2.5)	증착기 (8→2.5)

구 분	적용품목 및 세율(%)		
물가안정 및 수급원활 [10]	매니옥칩 (20→10) 밀 (제분용) (3→1) 아몬드 (8→5) 천연가스 (3 →1)	맥아 (30→10) 옥수수 (가공용) (3→2) 귀금속회 (2→1)LPG (3→1.5)	맥주맥 (30→20) 향료 (8→5)
세율불균형시정 · 기타 [4]	정제당 (40→35) 유당 (20→10)	동의 박 (8→4)	유연처리원피 (5→3)

합 계 : 30개

* () 내는 '07기본세율 → '07할당세율

* (밑줄 친 부분) : '07년 할당관세 신규 적용 품목

'07년도 조정관세 운용계획

조정 관세[調定關稅, adjustment duties]

일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산업구조가 변동되어 물품간 세율의 균형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 국민보건·환경보존·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이 증가되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을 때 사용된다.

수입자유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제거하고자 하는 관세로 한국에서는 1984년부터 시행되었다.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라 수입자유화 품목에 대한 수입이 급증하여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자유화 수용태세가 어느 정도 갖추어질 때까지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기본관세에 100% 이내의 관세를 더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령으로 공포·시행하며 적용기한은 보통 1년이다.

기본운용방향

- ◇ 대외통상마찰 예방, 국내 소비자 후생증진 등을 위한 단계적 조정관세 축소 운용방침에 따라 대상범위를 축소하고 조정관세율을 인하

<조정관세 적용 품목선정 기준>

- ① 조정관세의 단계적 축소방침에 따라 신규품목은 배제
- ② 기존품목(18개)중 양식어민 보호, 관세율 및 내외가격차로 변칙 수입 가능성이 크거나 해외어장의 안정적 확보 등 보호 필요성이 있는 품목
- ③ 기존 품목중 대외통상마찰 우려가 크거나 국내산업에 주는 영향이 크지않은 품목은 제외

<조정관세율 책정 기준>

- 현행 조정관세율의 10% 범위내에서 인하
- 다만, 조정관세가 과보호 수준인 경우 추가인하하거나 해외어장 개척 등 원양어업 보호 필요성이 있거나 대외 통상마찰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는 현행유지

<조정관세 적용 품목 현황>

- 총 16개 품목에 대하여 조정관세 적용

'06년	제외	'07년 운용안 (36개 품목)		적용기간
		세율인하	현행유지	
18	2	1	9	'07.1.1 ~ 12.31

[16개 조정관세 품목 현황]

구 분	적용품목 및 세율(%)
농산물 (5)	표고버섯 (30→45→45 또는 1,625원/kg), <u>메주 (8→18→16 또는 64원/kg)</u> 혼합조미료 (8→45→45) 당면 (8→45→45 또는 355원/kg) 찐쌀 (8→50→50) * 바나나 : 조정관세 제외(조정 40 →기본 30)
수산물 (9)	<u>활돔 (10→45→40 또는 2,781원/kg)</u> <u>활농어 (10→40→38)</u> <u>냉동오징어 (10→24→22)</u> 활뱀장어 (10→30→30 또는 1,908원/kg), 활민어 (10→36→36) 냉동명태 (10→30→30) <u>냉동꽂치 (10→36→34).</u> <u>냉동민어 (10→63→57)</u> 새우젓 (20→50→50 또는 363원/kg) * 냉동홍어 : 조정관세 제외(조정 27→ 기본 10)

구 분	적용품목 및 세율(%)
공산품(2)	합판(8→12→11) 전자부품강착기(8→16→16)

합 계 : 16개

- ※ 조정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신규로 추가한 품목은 없음
 ※ ()내는 'J7실행세율→'J6조정관세→'J7조정관세' 순서임
 ※ 굵은글씨는 세율인하품목(7개)
 ※ 기존품목(18개) 중 제외품목(2개) : 바나나, 냉동홍어

[별첨 1] 할당관세 신·구세율 대비표

(단위 : %, 관세율)

관세율 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잠정)	할 당 관 세		
호	소호			현 행	개 정	증 감
J713	10	완 두(사료용)	0	0	-	(제외)
J714	10	매 니 옥 칩(주정용)	20	10	10	-
J714	10	매 니 옥 펠 리 트(사료용)	7	1	1	-
J802	12	아몬드(탈각한 것)855-				
1001	90	밀(사료용)	0	0	-	(제외)
1001	90	밀(제분용)	1.8	1	1	-
1003	00	맥 주 맥	30	20	20	-
1003	00	겉 보 리(사료용)	0	2	2	-
1005	90	옥 수 수(사료용)	3	0	0	-
1005	90	옥 수 수(가공용)	3	2	2	-
1107	10	맥 아(주정용)	30	10	10	-
1107	20	맥 아(주정용)	27			
1201	00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3	1	1	-

(단위 : %, 관세율)

관세율 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잠정)	할 당 관 세		
호	소호			현 행	개 정	증 감
1214	10	알 팔 파(사 료 용)	1	1	-	(제외)
1214	90	┌ 근채류(사료용 및 버섯채배용) └	20	2	2	-
2308	00		0			
1514	91	유채조유	8	8	-	(제외)
1514	99	유채정제유	10	10	-	(제외)
1701	91	정제당	40	40	35	-
01702	11	유 당	20	-	10	(신규)
2302	30	밀기울(사료용)	2	2	-	(제외)
2304	00	대두박(사료용)	1.8	-	1	(신규)
2306	10	면실박(사료용)	2	2	-	(제외)
2306	50	야자박(사료용)	2	2	-	(제외)
2306	50	팜 박(사 료 용)	2	2	-	(제외)
2510	10	천 연 인 산 칼 습	0	0	-	(제외)
3302	10	방 향 성 물 질 의 혼 합 물	8	0	0	-
3501	10	카 세 인 · 카 세 인 산 염	8	8	-	(제외)

* 추천기관 : 한국식품공업협회

[별첨2] 조정관세 신·구세율 대비표

관세율 표번호		품 명	기본관세 (잠정)	할 당 관 세		
호	소호			현 행	개 정	증 감
J301	92	활 뱀 장 어	10	30	30	-
J301	99	활 돔	10	45	40	-
50301	99	활 농 어	10	40	38	-
20301	99	활 민 어	10	36	36	-
J303	79	냉 동 명 태	10	30	30	-
J303	79	냉 동 콩 치	10	36	34	-
J303	79	냉 동 홍 어	10	27	-	(제외)
J303	79	냉 동 민 어	10	53	57	-
J306	23	새 우 젖	20	50	50	-
J307	49	냉 동 오 징 어	10	24	22	-
J709	59	표 고 버 섯	30	45	45	-
J712	39	표 고 버 섯				
J803	30	바 나 나	30	40	-	(제외)
1902	19	당 면	5	45	45	-
1904	90	찜 쌀	5	50	50	-
21032	20	혼 합 조 미 료(고추장)	5	45	45	-
103	90	표 고 버 섯				
2103	90	매 주	5	18	16	-